**‘SSUGAR’ 동아리 회칙**

**제 1장 총칙**

**제 1조 [동아리 명칭]**

① 본 동아리의 명칭은 ‘SSUGAR’(이하 슈가)라 하며 슈가라고 읽는다.

**제 2조 [목적]**

① 슈가는 악기나 전자음 없이 오로지 목소리만으로 달콤한 음악을 만들어 동아리원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 3조 [동아리 소재]**

①본 동아리의 소재지는 숭실대학교 동아리연합회가 지정하는 곳으로 한다.

**제 2장 임원진 및 집행부**

**제 1조 [임원진의 임기]**

① 임원진은 회장, 부회장, 뮤직디렉터(이하 뮤디)로 정의한다.

② 임원진의 임기는 약 1년으로 한다.

**제 2조 [임원진 선출 방식]**

①임원진의 선출은 총회에서 동아리 내 투표로 선출된다.

**제 3조 [임원진]**

① 회장은 동아리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와 대내외활동, 동아리 연합회 관련 업무를 맡아 동아리의 책임자 역할을 수행한다.

② 부회장은 전반적인 회장의 업무를 보조하고, 서기 업무를 담당한다.

③ 뮤디는 음악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회장의 부재 시, 모든 지위와 권한은 뮤디에게 위임된다.

**제 4조 [집행부]**

①집행부는 임원진과 임원진이 선발한 집행부원으로 구성된다.

② 집행부원의 편제는 총무, 미디어부장, 디자인부장을 기본으로 하며 이는 겸직이 가능하다. 임원진은 동아리원 중 임원진의 의사를 반영한 선출을 통해 집행부원을 더 선발할 수 있다.

③ 집행부원의 인원은 10명 이하로 제한한다.

집행부는 각 호에 해당하는 권리를 가진다.

-동아리 내 의결 사안에 대해 결정할 수 있다.

-동아리 내 모든 활동을 기획할 수 있다.

집행부의 의결은 집행부 회의를 통해 진행한다.

**제 5조 [집행부 회의]**

① ‘집행부 회의’란 집행부의 의사결정을 위해 임원진 및 집행부원의 일부 혹은 전부가 소집되는 것을 말한다.  
② 임원진은 집행부 회의를 위한 소집 명령을 발의할 수 있다.

③ 집행부 회의는 집행부와 학기에 2회 이상 진행한다.

집행부 회의는 문서로 기록한다.

**제 3장 회원**

**제 1조 [회원 자격 및 의무]**

① 슈가 회원은 숭실대 재, 휴학생 중 아카펠라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한다.

② 슈가 회원은 동아리의 정규 활동에 성실히 참여해야 한다.

**제 2조 [회원의 가입]**

① 회원 가입은 매년 1학기 초 신입생 모집을 통해 진행한다.

② 집행부의 판단에 따라 학기 중 신입생 모집을 진행할 수 있다.

③ 신입생 모집을 통해 선발된 사람은 동아리 회원이 된다.

**제 3조 [회원의 탈퇴]**

①탈퇴를 희망하는 회원은 집행부에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탈퇴가 성립된다.

② 동아리 내 규칙 위반 시 집행부는 의결을 통해 회원의 탈퇴를 결정할 수 있다.

③ 동아리 회원의 탈퇴 시 회원이 동아리에 지급한 회비 및 기타 비용은 환급하지 않는다.

**제 4장 회의**

**제 1조 [정기 모임]**

① 동아리의 정기 모임은 주 1회 이상으로 한다.

② 정기 모임의 참석자는 동아리원 전체이다.

③ 시국에 따라 팀별 정기 모임이 가능하다.’

**제 2조 [총회]**

① 총회는 1년에 2번 (1학기 말, 2학기 말) 진행한다.

② 총회에서는 회계내역 공개와 동아리 사업 진행에 대해 보고한다.

③ 임원진의 판단에 따라 긴급 총회 소집이 가능하다.

총회는 당해 활동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참석이나 위임장이 있을 때 개최 가능하다.

총회에서 발의된 안건은 총회 참석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.

**제 5장 재정**

**제 1조 [수입]**

① 동아리 내 수입원은 부원의 회비, 교내 동아리 지원금, 대회 상금, 기부금, 벌금 등이 있다.

② 주 수입원은 부원의 회비이며 이는 본 동아리의 활동비로 사용한다.

**제 2조 [회비]**

① 본 동아리의 모든 회원은 집행부가 지정하는 일정액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.

**제 3조 [회계]**

① ‘회계’란 동아리원들의 재정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동아리의 재정 상태를 식별하고 측정하여 보고하는 과정을 말한다.

② 회칙 제 2장 4조 ②항에 따라 임원진은 ‘총무’를 지정하여 회계 업무를 일임한다. 총무는 회계 장부를 만들어 각 입출금 내역에 대하여 그 출처와 목적을 명확히 한다.

③ 회계 장부에는 회계 계좌의 모든 입출금 내역이 담겨있어야 하며, 총무의 임의판단에 따른 예외 사항이 존재할 수 없다.

모든 입출금 내역을 다루어야 하므로, 오입금 후 환급 등의 내역도 삭제하지 않고 기록해야 한다.

**제 4조 [결산보고]**

① 회계담당자는 총회에서 당 학기의 결산보고를 해야 한다.

**제 6장 동아리 등록**

**제 1조 [등록]**

① 동아리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숭실대학교 학칙 및 동아리연합회 회칙에 따른다.

**제 7장 부칙**

**제 1조 [회칙 발효]**

① 각 개정안의 개정 회칙은 다음 개정일부터 시행한다.

초판 [2020.03.01]

개정 1판 [2021.03.25]

**제 2조 [회칙 개정]**

① 본 동아리의 회칙 개정은 총회에서 회원의 투표에 의해 개정될 수 있으며 출석 인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이어야 한다.